

부속서

경제협력

제 1 조 통관절차

당사국들은 통관문제에 관한 당국 간의 협력이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여,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, 그리고 당사국들의 정책과 절차에 합치하게,

- 가.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한다.
- 나. 비밀 정보를 제외하고 통관절차와 관련된 최적 관행, 이행 및 위험관리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.
- 다. 통관절차에 있어 정보기술의 적용과 감독 및 검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협력과 경험의 교환을 촉진한다. 그리고
- 라.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, 통관 법률과 규정을 공표하고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과 필요한 경우 통관 접촉선들 간에 통관절차를 교환하는 것을 보장한다.

제 2 조 무역 및 투자의 진흥

1. 당사국들은 정부기관 및/또는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진흥하는데 협력한다.

2.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.

- 가. 대한민국에 대한민국-동남아시아국가연합 센터의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개시
- 나. 무역 및 투자 사절단, 정기적인 비즈니스 세미나 및 포럼, 그리고

전자적 연계(전자적 비즈니스 매칭)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공유와 같은 무역 및 투자 진흥 활동의 조직. 그리고

다. 법률실무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보급하는 전문가 훈련프로그램 및 공동세미나를 통하여, 특히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대한 법률제도 개발의 지원과 무역 및 투자 관련 법률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

제 3 조 중소기업

1. 당사국들은 당사국 각국의 국가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, 당사국들의 중소기업 및 관련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는데 협력한다.

2.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.

- 가. 경영기술 개발, 기술 이전, 상품의 질 개선, 공급체인연계, 정보기술, 그리고 자금조달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접근과 같은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중소기업이 협력 및/또는 최적 관행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회의 창설
- 나.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대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과 대한민국에 대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. 그리고
- 다. 당사국들의 관련기관이 중소기업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하여 토의하고 협력하며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도록 장려

제 4 조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

당사국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이 인적자원의 지식과 기술에 주로 의존한다는 점을 인식하여,

- 가. 당사국들의 학자, 교사, 학생, 교육기관 회원, 그 밖의 과학 또는 교육활동 종사자의 교류를 장려한다. 그리고
- 나. 당사국들의 관련기관이 당사국 노동인력의 능력과 기술의 향상에 대하여 토의하고 협력하는 것을 장려한다.

제 5 조 관 광

당사국들은 관광이 당사국들 간 상호 이해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과 관광이 당사국들의 경제에서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여,

- 가. 각 당사국으로의 방문입국자 증가를 위한 관광 개발 및 증진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을 모색하고,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 대한민국 내의 웹사이트 간의 연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.
- 나. 당사국들의 관광기관이 관광 훈련과 교육에 관한 협력,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관광안내원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훈련 및 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.
- 다. 당사국의 영토 내의 관광 당국과 전문 관광기관 간의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하여 당사국들의 영토에서 관광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캠페인을 수행하는데 협력한다.
- 라. 당사국들의 영토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증진하는데 협력한다. 그리고
- 마. 관광 및 관련 부문에 대한 관련 통계·정책 및 법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.

제 6 조 과학 및 기술

당사국들은 과학과 기술이 중장기적으로 당사국 각국 경제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,

- 가. 훈련프로그램의 설치와 과학 및 기술 정보의 교환을 모색한다.
- 나. 나노기술·재료기술·전자기술·우주기술·생명공학 및 기술 관리와 같은 특히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과학의 공동 연구개발 사업 수행과 그 밖의 형태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검토한다.
- 다. 당사국들의 연구기관 간 연계를 장려한다. 그리고
- 라. 연구개발시설 및 과학 장비를 상호 호혜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.

제 7 조 금융서비스

당사국들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협력한다.

- 가. 시장 추세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을 포함하여 규제 협력 및 개발의 증진
- 나. 자본시장을 포함하여 금융 시장 및 기반시설 개발의 촉진
- 다. 인적자원 및 기관 능력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의 제공과 위험관리 분야에서의 경험 교환
- 라. 금융서비스 자유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대한 지원. 그리고
- 마. 자본시장 개발에서의 능력배양 제공

제 8 조 정보통신기술

1. 당사국들은 국내 및 국제적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업관행이 민간부문의 주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, 정보통신기술 이용을 통하여 당사국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증진

하도록 협력한다.

2.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.

- 가. 전자 상거래의 증진
- 나. 소비자,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신생 서비스 및 차세대 네트워크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 이용의 증진
- 다.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인적자원 개발
- 라. 공동 연구개발사업의 수행. 그리고
- 마. 스팸 방지 노력의 증진

3. 협력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- 가. 정보통신기술 정책,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서비스의 창출, 전자정부 서비스의 제공, 콘텐츠 개발, 네트워크 보안, 그리고 사생활 보호에 관한 정보와 전문지식의 교환
- 나. 네트워크 기반시설, 창조산업 및 멀티미디어 산업,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기반시설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수행
- 다. 당사국들 영토 내에서 정보통신기술 산업에 대한 민간 및/또는 공공 기업 투자의 장려 및 촉진. 그리고
- 라.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사업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

제 9 조

농업·수산업·축산업·작물 및 임업

1. 당사국들은 생태 농림업 및 생태관광을 포함하여 농업·수산업·축산업·작물 및 임업에서 협력과 기술 협력의 기회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, 당사국들의 상호 혜택을 위하여 협력을 실시한다.

2.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정보 교환
- 나. 능력 배양 및 인적자원 개발

- 다. 공동 연구개발. 그리고
- 라.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기술 지원

3. 협력 형태는 다음과 같다.

- 가. 신규 기술을 포함하여 제1항에 규정된 분야에 관련된 정보 교환의 증진 및 경험의 공유
- 나. 공동 연구사업의 증진
- 다. 전문가 교류
- 라. 수확 후 단계를 포함하여 기술 지원의 제공
- 마. 세미나·훈련 및 워크숍의 수행
- 바. 농장 및 관련 생산센터에 대한 학습 방문의 장려
- 사. 실험실의 기술·능력 및 노하우의 강화, 그리고
- 아. 당사국들이 확인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에서의 협력

제 10 조

지적 재산

1. 당사국들은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제적 경쟁력의 한 요소로서 지적 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, 지적재산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협력을 증진한다.

2.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하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지적재산의 창출 및 활용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경험의 공유
- 나. 지적재산 분야에서 각 당사국의 인력에 관한 정보의 교환, 경험의 공유 및 훈련의 장려
- 다. 각 당사국의 가입을 조건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 조사 및 국제예비조사의 수행
- 라.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
- 마.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영토 내에서 특허 및 상표를 포함하여 지적재산 데이터베이스의 향상 및 현대화를 촉진하는데

대한 지원의 제공. 그리고
바. 지적재산의 보호에 관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강화

제 11 조 환경산업

1. 당사국들은 경제개발·사회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인식하여, 당사국 각국의 관심 있는 정부기관·산업·기구 및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할 방법을 모색한다.

2. 이러한 목적으로, 당사국들은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다음의 환경협력 활동을 추구한다.

- 가. 압축천연가스기술 및 정책과 같은 환경기술 및 정책에 관한 협력
- 나. 산업의 환경능력 배양에 관한 협력과 환경산업의 정보 및 경험의 교환
- 다. 환경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교류 및 교육에 관한 협력. 그리고
- 라. 상호 합의하는 그밖의 형태의 환경협력

제 12 조 방 송¹⁾

1. 당사국들은 국경 간 문화교류의 통로로서의 방송의 역할과 디지털 경제에서의 방송의 중요성을 고려하고, 방송기술의 발전이 당사국들이 상호 혜택을 도모하는 데 있어 도전이자 기회라는 점을 인식한다. 이러한 목적으로, 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과 대한민국은 자국 관심에 따라 양자적 기초 위에서 방송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개발하고 촉진한다.

2. 방송부문을 규율하는 당사국들의 법률 및 규정을 조건으로, 협력분야

1) 이는 투자 및 서비스무역에서의 당사국들의 자유화 약속을 저해하지 아니한다.

는 다음을 포함한다.

- 가. 방송 및 관련부문에서 상호 합의하는 통계와 정책·법률 및 규정에 관한 정보의 교환
- 나. 새로이 등장하는 방송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의 수행
- 다. 방송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의 증진. 그리고
- 라. 적절한 경우 방송 재송신의 상호 교환의 장려

제 13 조 건설 기술

당사국들은 적절한 경우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.

- 가. 인적자원 및 건설 개발
- 나. 건설 기술
- 다. 국제적 프로젝트의 협력. 그리고
- 라. 기반시설 건설 디자인

제 14 조 표준 및 적합성 판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

1. 당사국들은 무역의 촉진에 있어서의 산업, 농업 및 작물에 대한 기술 규제, 표준 및 적합성 판정절차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,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한다.

- 가.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표준, 기술 규제 및 적합성 판정 절차에 대한 의견 및 정보의 교환
- 나. 상호 합의에 따라 표준 및 적합성 판정 절차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의 교환
- 다.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전문가 및 직원의 교류
- 라. 당사국간의 무역 흐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상호인정약정 및 협정의 모색

- 마. 합의된 분야에 대한 세미나, 훈련 및 훈련 파견, 직원 교류, 그리고 규제 대화를 포함하여 표준, 기술 규제, 도량형 및 적합성 판정에 관한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
- 바. 표준 및 적합성 판정에 관한 관련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 당사국들간 협력의 강화, 그리고 국가 기술규정의 개발의 기초로서, 적절한 경우, 국제표준 및 적합성 판정 지침의 활용 증진
- 사. 적절한 경우, 당사국들간 시험프로그램과 시험실험실 및 인증 네트워크의 개발
- 아.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에 있어 기술 지원의 모색. 그리고
- 자. 당사국들이 확인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밖의 분야에서의 협력

2. 당사국들은 농업, 수산업, 동물 및 식품 제품과 작물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어서의 위생 및 식물위생(이하 “위생 및 식물위생”이라 한다) 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, 상호 혜택을 기초로 다음에서 협력한다.

- 가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 교환
- 나. 위생 및 식물위생과 관련된 사건 발생에 관한 정보 교환
- 다. 유통 및 포장 제도의 개선
- 라. 훈련 및 전문가 교류의 조직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는 당해 분야에서 인적자원의 개발
- 마. 신기술의 개발 및 증진. 그리고
- 바. 당사국들이 확인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밖의 분야에서의 협력

제 15 조 광업

- 1. 당사국들은 광업 부문에서의 협력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,
 - 가.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공동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, 에너지 및 광

물 매장량에 대한 탐사 및 채취, 광업 부산물 처분, 그리고 폐광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의 증진에 대하여 협력한다.

나. 광업부문에 대한 무역 및 투자의 촉진을 장려한다.

다.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최적 활용에 있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광물개발 관행의 증진에 대하여 협력한다.

라. 광업 정책 및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보 교환을 장려한다.

마. 민간부문간의 사업 제휴를 증진하고 개발한다. 그리고

바. 광업의 발전 및 증진을 목표로 훈련·세미나·워크숍 및 전문가 교류를 수행한다.

제 16 조

에너지

당사국들은 급속한 경제발전속도를 고려할 때 미래에 당사국들의 영토 내에서 에너지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,

가.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증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.

나. 압축천연가스기술 및 정책과 같은,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은 대체 및 재생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협력한다.

다. 기반시설 개발, 자원 개발, 투자 촉진 및 새로운 에너지 절약 기술의 적용에 있어 협력한다.

라. 전문가 교류를 장려한다. 그리고

마. 민간부문 간의 사업 제휴를 증진하고 개발한다.

제 17 조

천연자원

당사국들은 천연자원의 적정한 관리 및 효율적 이용이 당사국 각국 경제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, 다음에서 협력한다.

가. 지하수 격납 및 운송을 모의실험하고 예측하는 적절한 수학적 모델의 개발 및 활용, 폐기물 저장/처분과 농공업 활동이 지하수질

- 에 미치는 위험의 평가, 그리고 지하수 보호지역의 설정
- 나. 에너지 및 광물 매장량에 대한 탐사·채취 및 활용, 광업 폐기물 처분, 그리고 폐광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의 향상
- 다. 투자 촉진 활동. 그리고
- 라. 지하수 및 지표수를 포함한 수자원의 종합관리, 그리고 이 분야에서의 정보기술의 적용

제 18 조 조선 및 해상 운송

1. 당사국들은 무역 및 개발에서의 해상 운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, 당사국 각국의 관련 기관을 통하여 조선 및 해상 운송 분야에서 협력한다.
2. 그러한 협력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.
 - 가. 정보 교환의 수행과 경험의 공유. 그리고
 - 나. 전문가 교류의 증진

제 19 조 영 화²⁾

1. 영화산업이 당사국들간의 이해 및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갖는 잠재력과 당사국 각국 경제에서의 영화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인식하여, 관심 있는 당사국들은 당사국 각국의 관련 기관을 통하여 당사국 각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2. 협력 형태는 다음과 같다.
 - 가. 영화 전문가의 교류

2) 이는 투자 및 서비스무역에서의 당사국들의 자유화 약속을 저해하지 아니한다.

나. 정보 교환. 그리고

다. 영화제 주최 및 참가에서의 협력